지침 개정 이력

- □ 개정일 : 2022. 12.
 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
 - 개정사유 : 챠량계 건설기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, 부합하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개정함
 - 주요 개정내용
 - 3.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"차량계 건설기계", "건설용 리프트"정의 정비 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, 제132조제2항의 제3호 라목.

 - 5. 기초공사용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"항타기 및 항발기"관련 안전기준 정비 └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 제2관
 - 5. 기초공사용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"항타기 및 항발기"관련 안전기준 정비
 - 6.2.9 이동식 크레인 설치 및 작업시 유의사항 중 "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제한 관련, 예외적 허용근거"마련
 - ┗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
 - <붙임1> 작업별 건설기계 분류표 정비
 -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제196조 및 동 규칙 [별표6]
 - <붙임2>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안전기준(한국산업표준) 반영
 - ↳ KS B ISO 12480-1의 부속서 C